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86 발의연월일: 2023. 6. 26.

발 의 자 : 이 용 · 이명수 · 양금희

엄태영 · 최영희 · 홍문표

김학용 · 조경태 · 조명희

이용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인 공제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담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 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의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체육인복지재단

- 제19조의2(체육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체육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⑤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의3(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사업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공고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의4(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 2. 원로 체육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체육인의 복지 지원
 -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 연구
 - 4.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
- 6.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7. 체육인 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8.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재단은 제1항제5호의 체육인 공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회원부담금
-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 제19조의5(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체육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인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 험정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6(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체육인(이하 "지원대상 체육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 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

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체육인 등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8(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25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9조의6 또는 제19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 ·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의9(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 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체육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을 "권한을 위임·위탁받은"으로, "전담기관은"을 "재단은" 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기관은"을 "재단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의4제1항"으로, "전담기관의" 를 "재단의"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2. 제1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 한 사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10을 위반하여 체육인 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 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되는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되며,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스포츠안전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체육인복지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재단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안전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 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안전재단의 임직원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⑤ 재단의 설립비용은 안전재단이 부담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u><삭 제></u>		
구축·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u><</u> 삭 제>		
지정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			
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u>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u>			
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			
<u>육 관련 법인</u>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			
<u>야 한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 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 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 | <삭 제> 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u>행</u>한다.
 -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 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 업안정을 위한 사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 다)의 관리 · 운영
 -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 · 연구
 - 4. 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 업
 - 5.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 <u>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u> <u>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u> 운영한다.
 -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 한다)
 -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u><신 설></u>

<신 설>

<삭 제>

제4장 체육인복지재단
제19조의2(체육인복지재단의 설립등)① 체육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④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문

<신 설>

<신 설>

<u>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u> 아 취임한다.

 ⑤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정관) ① 재단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사업·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공고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의4(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제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

- 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 업안정을 위한 사업
- 2. 원로 체육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체육인의 복지 지원
-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연구
- 4.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공제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
- 6.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 7. 체육인 복지를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8.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재단은 제1항제5호의 체육

- 인 공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회원부담금
-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제19조의5(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
 업에 필요한 경우 체육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 이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이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u> <u>보"라 한다)</u>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제19조의4제1항 각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체육인(이하 "지원대상 체육인"이라 한다)의 수급 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

·건물·소득·재산·출입국·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 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의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 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 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

<u><신 설></u>

<u>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u> 된다.

제19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요 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지원대상 체육인 등 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세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제1항에 따 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 대상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 (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 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에 따 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 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 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 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

다.

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 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 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⑥ 제1<u>항·제2항 및 제4항</u>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 25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 ·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9조의6 또는 제19조의 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 • 관리 • 보 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의9(감독 등)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신 설>

<u> <신 설></u>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전황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 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
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
는 체육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u>권</u> 한을
<u> </u>
<u> пр прсс</u>
- <u>재단은</u>
<u>게 납 ㄴ</u>

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 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 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 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5. (현행과 같음) 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	27조(탈적 작용에지의 3구된 의제)

- 1. (생략)
-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생략) 제28조(벌칙)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2. 제19조의4제1항----------_재단의---

- 3. (현행과 같음)
- 제28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제1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2. 제1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 는 누설한 사람
- 제29조(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제19조의10을 위반하여 체육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